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85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정춘생·황운하·서왕진

김선민 • 이해민 • 김준형

차규근 · 김재원 · 신장식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소환을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찾을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권이 있음(안 제3조).
- 다.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수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수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수 있음(안 제7조).
- 라.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 거구를 대상으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 마.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안 제22조).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 제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 2.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사무의 일부를 국민소환투표 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그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국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국민소환투

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사무" 로 본다.

- 제3조(국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다.
 - 1.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전입신 고 90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 2.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권: 18세 이상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전입신고 90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4조(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제11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계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소환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 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하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국민소환투표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 참여·투표방법 그 밖에 국민 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소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 제7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지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1. 지역구국회의원 :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
 - 2. 비례대표국회의원 :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
 - ②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지역구국회의 원의 선거구별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서명요청 활동) ①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

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 권을 위임받은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 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국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 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 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9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 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1. 국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 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호를 제외한다)
- 5.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인 경우 해당 지역구국회의 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6.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인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보다 후순위에 올라있는 사람 (이하 "후순위후보자"라 한다), 후순위후보자의 가족(배우자, 후순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순위후보자 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 ④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국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 제10조(국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국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서명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補正)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2. 국민소환투표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와 소환청구인서명 부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국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 제11조(국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 국회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회의원(이하 "국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국민소환투표공보)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안의 내용,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 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를 1 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국민소환투표인(국민소환투표인으로서 「장 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형 국민소환 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작성방법·배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 ① 국민소환투표일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 원회가 정한다. 다만,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선거를 제외한다)
 -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 제14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소 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국민소환투표의 형식)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 제16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국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 제18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

- 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68조제1항 및제3항·제69조·제79조·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 및 제8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각각 5명 이내에서 지정한 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각각 5명 이내에서 지정한 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각각 5명 이내에서 지정한 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

함한다)"은 각각 "국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 제20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방법의 국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4.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5.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6. 국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③ 지위를 이용한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제4장 국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등) ①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 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 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국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 제22조(국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된다.
 - ②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국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국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제24조(국민소환투표소송) ①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국민소환투표인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국민소환투표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22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① 제24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에 관한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구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공직선거법」 제19 5조부터 제20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6조(국민소환투표관리경비)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의 준비 · 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 2.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 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 3.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 4. 국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사 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 한 경비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국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 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

민투표관리기관"은 "국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국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국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국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국민소환투표청구"는 "국민소환투표청구"는 "국민소환투표청구"는 "국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국민소환투표청구서"로, "주민투표 안"은 "국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 같은법제10조제1항중"제9조제2항"은 "제7조"로 보며, 같은법제12조제3항중 "주민"은 "국민(해당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인국회의원은제외한다)"으로본다.

②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며, 국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국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국민소환투표일까지 해당 관할선거 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둔다.

-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 제29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죄 및 제38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 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 제30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1조부터 제36조의 죄 및 제38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31조(벌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 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국민소환투표 인(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거마(車馬)・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3.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 · 동창회 · 친목회 ·

- 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 5. 국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 6.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국민소환투표지를 제거·파 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 7.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8.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국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 9.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국민소환투표를 하거나 국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 3. 허위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 4.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위반 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 제34조(벌칙)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 2. 제18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 표운동을 한 자
-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 제36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자
 -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 4.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제37조(이익의 몰수)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 제38조(국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

- 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 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국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국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국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국 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 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 4.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

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